

##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2. 9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8. 2. 16
- 다. 상정일자 : '98. 2. 16 (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자 : 문화공보실장 최성기
- 나. 개정사유
  -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·관리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 - 제5조 제1항중 "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"를 "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."로 개정
  -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신설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길중)

-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"생략"

### 5. 토론요지

"생략"

### 6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첨부 :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"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"를 "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기금의 관리)</p> <p>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 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 여 적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 (기금의 관리)</p> <p>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